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1. 2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공주택지원과	담당자	• 과장 김영혜, 사무관 박선동 • ☎ (044) 201-4530, 4531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「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」 제정안 행정예고 - 예비입주자 모집규모, 모집시기 및 관리방식 등 명시 -

-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% 이상의 예비입주자를,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,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「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」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.
 -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%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.

② 공공임대주택 입주,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%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,

- 이 경우, 최근 3년 평균 퇴거율,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.

③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「주거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‘마이홈’(<http://www.myhome.go.kr>)에 입력하고,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.

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)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□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

전화 : 044-201-4531, 팩스 044-201-5572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박선동 사무관(☎ 044-201-45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